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 ②

클 실는 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6월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이번호

건설기술자 상호인정

건설기술자와 관련한 질의 및 회신..... 8월호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서 증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II.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일반

1.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종류

- 건설기술자의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건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 건설기술자로서 최초로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¹⁾ 어느하나에 해당된 날부터 3년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 일정한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감리원의 교육(건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 감리전문화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일정한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비 부담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법 제6조제3항)

○ 건설기술자 교육의 종류 및 내용

교육 구분		기간	교육 내용	교육기관
최초	기본	2주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	1주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중급, 고·특급 수준)	종합, 전문
승급	전문(중급)	1주	중급수준	
	전문(고급)	1주	고급수준	

*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건설업,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건설관련),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관련), 측량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교육대상자별 교육훈련시기 및 기간

대 상	교육 구분	교육훈련시기 (기간)
건설 기술자	기본	- 건설기술자가 된 후 3년 이내(2주 이상) : 최초교육 ·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 · 기술사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전문	- 건설기술자가 된 후 3년 이내(1주 이상) : 최초교육 - 일정한 자격·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1주 이상) : 승급교육 ※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감리원	기본	-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2주이상) : 최초교육 ※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
	전문	-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이상) : 최초교육 - 일정한 자격·학력·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2주 이상) : 승급교육 ※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

비 고

1. 건설기술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의한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하는 기한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 고객중심의 특성화·전문화된 전문교육 실시

- 우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등급별·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개설
- 기계, 국토개발 등 소수분야 개설 확대

○ 건설기술자 편의제공 확대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강화

- 원격교육, 출장교육, 맞춤형교육, 분할교육 등 확대 시행
- 수료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교육기관 평가

4. 교육훈련기관 지정현황

- 건설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및 팩스	교육과정
건설기술교육원	본원	인천 남동구	032-463-4901 032-461-6524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교통·환경
	분원	서울 역삼동	02-565-0162	토목·건축·기계
건설산업교육원		서울 도곡동	02-575-7123 02-575-7103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광주 동림동	062-513-0116 062-513-6111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본원	경북 영천	054-335-8383 054-336-8384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분원	부산 구포동	051-588-0661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	043-850-4513 043-850-4770	토목·건축·안전·환경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	043-879-2411 043-879-2331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개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및 팩스	교육과정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경기도 일산	031-910-4114	안전진단
한국건설감리협회	서울 도곡동	02-3460-8600	감리현장관리기법 실무
대한측량협회	서울 당산동	02-2670-7100	측량
건설사업관리협회	서울 역삼동	02-561-1943/5	건설사업관리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서울 서초동	02-3415-8886	건축 및 토목 품질시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 논현동	02-3441-0600	건설사업관리
한국기술사회	서울 역삼동	02-538-3159	건설사업관리

5. 타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분야	근거 법령	교육 대상	교육 기관	당 초		개 정		비고
				주기	기 간	주기	기 간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40조(규칙 제34조)	수질관리, 수질환경, 토목분야 기술자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국립환경연구원	3년	14일 이내	3년	3일 이내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규칙 제113조)	대기관리, 대기환경,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보전협회	3년	14일 이내	3년	5일 이내	인정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규칙 제69조)	수질관리, 수질환경, 토목분야,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기술자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보전협회	3년	14일 이내	3년	5일 이내	인정
환경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규칙 제80조)	소음·진동, 대기관리, 대기환경, 토목분야,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기술자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보전협회	3년	14일 이내	3년	5일 이내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규칙 제39조)→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99.12.3제정	소음·진동, 대기관리,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기술자	환경공무원교육원	3년	14일 이내	법령 삭제		불인정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규칙 제39조)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기술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안전협회	2년	· 관리책임자: 6시간 ·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이상 -보수: 24시간이상	2년	· 관리책임자: 6시간 ·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이상 -보수: 24시간이상	인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규칙 제4조의 2)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기술자	시설안전기술공단	3년	5일 이상	1회	5일 이상	인정
전기	전기사업법 제47조(규칙 제66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년	21시간 이상	3년	21시간 이상	인정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영 제11조, 규칙 제11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3~5년	14~35시간 이상	법령 삭제		불인정
광업자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규칙 별표8)	화약류관리, 광산, 시추, 광산보안, 석재 기술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5년	3일 이내	면허 취득시 1회	60~90분('01.4.12)	불인정
국토개발	측량법 제51조(규칙 제26조)	측지기술자	대한측량협회	5년	14~35시간 이상	법령 삭제		불인정
공통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46조	국가·지자체 및 투자기관 중 건설분야 기술자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1~2주(건교부 교육원)		5일 이상(지자체 교육원 추가)		추가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관련 의무교육	-	-	-		5일 이상		신설

〈적용기준〉 * 상기교육과정을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최초교육(3주)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는 최초교육의 전문교육(1주)으로 인정(단, 승급교육은 해당없음)

III. 기술자 상호인정

1. APEC 엔지니어

○ 목적 : APEC 회원국간의 엔지니어 상호인정

○ 관련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 제도내용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엔지니어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각 국의 심사등록위원회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심사하여 등록된 엔지니어

- 인정된 공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자국에서 독립적인 업무활동 가능하다고 인정받을 것
- 졸업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할 것
- 주요한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2년 이상의 책임자 경력을 보유할 것
- 만족할만한 수준의 계속교육을 유지하고 있을 것

○ 회원국 및 등록분야

- 회원국 : 총13개 국가가 정회원('07년 현재)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싱가포르
- 등록분야 : 총15개 분야('07년 현재)
 - Civil, Structural, Mechanical, Chemical, Electrical, Mining, Geotechnical, Environment, Industrial, Bio, Information, Fire, Building Services, Petroleum, Aerospace

○ 추진조직

- 국제조직 : APEC 인적자원개발사무단(HRD) 및 조정위원회('99.11)

- 국내조직

• 심사등록위원회 및 사무국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99.6)

• 심사등록사무소 :

Civil, Structural분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그외 분야 - 한국기술사회

○ 건설분야 APEC 엔지니어 등록현황 : 총54명('06년 12월)

• Civil 분야 : 47명(기술사 34명, 특급<학·경력>기술자 13명)

• Structural 분야 : 7명(기술사 6명, 특급<학·경력>기술자 1명)

○ 상호인정협정 추진 현황

- 호주 심사등록사무소장이 방한, 국내 관련제도 확인('03.9)

- 한·일본, 한·싱가폴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협상에서 APEC엔지니어 체계를 활용한 건설기술자 상호인정 방안 논의

• 일본-호주가 '03.10월 상호협정체결(기계, 전기, 화공분야)하였으나, 건설분야를 상호인정 사례는 없음

- 한국 심사등록위원회 대표단이 호주를 방문 관련 제도 확인('04.10)

- 제5차 조정위원회 회기 중 호주와 상호인정협정 실무소회의('05.6) ●

<다음호 계속>